

창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단75073 판결 [보증금반환등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우주그린전극보일러

변론 종결 2015. 10. 6.

판결 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11. 3.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4. 보일러제작·설치업체인 피고와 보일러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1년, 보증금은 보일러 10대분의 시가 상당액인 2,50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보일러 구매·판매에 관한 경남지역 총판권을 갖기로 하면서 매년 100대 이상을 판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수회에 걸쳐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경 사임당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보일러 및 축열조 탱크 각 1대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임당 산후조리원에 위 보일러 등을 설치하였으나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1, 5,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총판계약 당시 연간최저판매량을 100대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일러 주문을 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2013. 10. 12. 원고에게 20만 원을 반환한 점, ④ 피고는 위 20만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차비로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20만 원이 수수된 것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로서 그 당시 원·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후 이루어진 원·피고의 대화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총판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성원